

참고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관련 법적 근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 2023. 8. 16.)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생략)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고.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7호			
1) 고의로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